

1. 인권이란?

1946년 유네스코(UNESCO)의 탄생 과정에서 기구의 성립 목적을 “정의, 법의 지배,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고양시키고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각 국민들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래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선언에 제시된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인권 교육센터, <https://studentrights.sen.go.kr/contents/b11.jsp>

2. 학생 인권 조례

제1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권 침해, 행사 참여 강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후 수업 강제, 휴식권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 소지품 검사,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를 하여서는 안 되며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단,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 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안전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성적, 기록, 가족관계 비밀 유지, 학교 밖 이름표 착용 강요를 금지 한다.
- 동의 없이 학생 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자기 기록의 열람, 수정, 삭제 요청의 권리를 갖는다.

제5절 양심,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 반성문, 서약서 강요, 종교과목 수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 교지,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학생 동아리 활동, 학생자치회 활동, 학칙 제.개정예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의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인권 침해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의 인권존중

■ 자녀를 한 명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1) 아이들이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 우유 잔을 엎질렀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먼저 “괜찮습니다. 제가 치우도록 하죠.” 혹은 “컵이 엎질러졌군요. 저기 휴지가 있어요.”라고 이야기 해줄 뿐이다. 손님의 부주의를 탓하거나, 손님에게 훈계를 늘어놓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이들에게만은 이런 양해와 존중, 그리고 정중함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 예절 바른 사람도 아이들 앞에서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고 만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명령을 무시 할 때 심한 모욕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아이들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어린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존중해 보자.

2) 비난과 욕설, 위협과 명령을 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뿐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경고, 비교 등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경고, 비교 등의 말에 대해서 소극적인 성격이 되거나 편애한다고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고 겁을 먹는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효과적인 것은 정확하고 짧게 문제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1) 주의 깊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은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중요한 생각이나 의견이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기를 배우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태도를 기르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가 말을 걸어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아주 바쁜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충분히 바쁜 상황임을 이해시키고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을 마련한다.

2) “오~”, “음~”, “그래~”와 같은 반응으로 아이들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질문과 충고를 하기 보다는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 호응하는 간단한 반응만을 보임으로써 아이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캐묻는 것과 장황한 충고를 받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질문과 충고를 할수록 아이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 줄수록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아이는 더욱 잘 표현하게 된다.

3) 아이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한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아이들이 즐겁거나 기쁜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은 부모가 그것 자체로 받아주면 상관없지만, 아이들이 슬픔이나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들에 대해서 교사나 부모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 괜히 울지 마라.” 라는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므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분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 감정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겠구나!”, “ 창피를 당해서 화가 났겠구나!”등으로 공감하는 표현을 해준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에도 안도감을 느낀다.

4) 모든 감정은 수용될 수 있지만 행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이가 “그 녀석 죽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 한다고 “정말 죽이고 싶겠구나.” 혹은 “난 동수 녀석 한 대 쥐어박고 말거야.”라고 한다고 “그래”라고 반응을 보이려는 건 아니다. 아이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 아이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권 교육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5) 아이들의 격심한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이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는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계속 흐느끼는 아이나 난폭하게 행동하는 아이에게는 아이의 감정이 정리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 서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함부로 나무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금지

코로나19 관련하여 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 혐오표현이란?

질병, 나이, 출신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선동하는 발언·몸짓 등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발언자의 악의가 없거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혐오”는 사전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나. 코로나19와 혐오표현

- 최근 코로나19 관련, 특정 국가·지역 출신인 학생, 특정 종교를 가진 학생,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을 운영하는 학부모를 둔 학생 등에 대하여 ‘코로나야, 바이러스야’라고 지칭하거나 ‘가게에 가지 마’라고 발언하는 등 해당 학생을 차별·배제하는 혐오표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특정 국가·지역 출신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괴담,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